

LPG판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이용권 부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이하 “액법”이라 한다)상의 판매사업 시설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 세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고 같다.

1. 중간검사
2. 완성·정기검사

제3조(정의) “불연성재료”라 함은 콘크리트·석재·벽돌·슬레이트·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제2장 중간검사

제4조(적용공정) 중간검사의 적용공정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보관실의 방호벽 설치공정
2. 용기보관실의 기초설치 공정(제5조 규정에 의한 기초설치 공정을 포함한다)
3. 용기보관실의 지주설치 공정(제5조 규정에 의한 지주설치 공정을 포함한다)

제5조(용기보관실 바닥 설치방법) ①용기보관실을 별도로 신축하건, 기존 건축물 내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경우에 용기보관실 바닥높이를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최저높이로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4 또는 별표5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5와 같이 기존 건축물 내에 용기보관실 바닥높이를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최저

높이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높이·규격 및 앵커볼트의 규격 등 기초설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강판제 방호벽의 설치방법)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강판의 허용오차(KS D 3500)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강판의 허용오차 (단위 : mm) | |
|-----------------------|-------|
| 강판의 종류 | 허용오차 |
| 6t | ±0.6 |
| 3.2t | ±0.34 |

② 강판의 강판과 용접방법은 100% 맞대기 전면(全面)용접으로 시공하고, 강판과 앵글강 및 지주와의 용접방법은 100% 전면(全面)용접으로 시공할 것.

※ 3.2mm 강판 사용시 강판과 강판 및 앵글강의 결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두께 6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토록 유도할 것

제7조(용기보관실 면적 등 사전확인) ① 용기보관실의 면적, 방호벽 및 지주의 두께, 칫수 등은 중간검사 단계에서 확인하여 부적합시에는 중간검사를 부적합처리한다.(신청인에게 공문 통지)

② LPG시설 기술검토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검사 부적합처리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통보한다.

제3장 완성·정기검사

제8조(완공도면 등의 징구) ① 완성검사의 시공내용이 기술검토 도면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시

공내용을 표시한 완공도면을 징구한다.

② 완성검사이시 LPG시설 기술검토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기술검토(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시에는 완공도면에 그 변경내용이 표시되도록 한 후 그 변경내용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완공도면 징구시에는 완공도면과 실제 시공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면내용이 시공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시공자)에게 보완을 요구(공문 또는 구두)하여 수정·보완된 완공도면을 징구한 후 완성검사를 처리한다.

제9조(용기보관실 지붕에 대한 검사방법) ① 단층구조의 기존 건축물 내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 용기보관실의 지붕은 불연성의 가벼운 재료로 설치한다.(가연성재료의 지붕을 설치하고 용기보관실 천장부에 불연성재료로 칸막이하는 행위 불용)

② 기존 건축물이 2층 이상의 건물 또는 단층 슬라브구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산자부 질의회신 1998. 8. 24일)

1. 허가관청이 별도로 정한 구조 또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허가관청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용기보관실의 천장면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다.

나. 용기보관실의 4면 중 압력 방출시 주변에 영향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1방향 이상, 합계 3,600cm²(1개 압력방출구의 면적은 2,400cm² 이하)의 압력방출구를 설치한다. 단, 압



력방출구의 숫자, 가로·세로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한다.

다. 압력방출구는 개방형 또는 안전유리를 사용한 유리창 구조로서 기존 건물벽의 최상부 또는 최상부에 근접한 위치의 기존 건물벽에 설치한다. 이 경우 압력방출구가 내부 방호벽으로 막히게 될 경우에는 방호벽을 부분절단하여 압력방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기존 건물 내에 설치된 강판제 용기보관실 출입문에 압력방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압력방출구 전면의 기존 건물 출입문에도 동일 크기 이상의 압력방출구(또는 안전유리를 사용한 유리창)를 설치하여 압력방출이 용이 하도록 한다.

제10조(용기보관실과 사무실 구분)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용기보관실과 사무실 사이에는 불연성재료로 칸막이를 설치하며, 틈새가 없는 밀폐구조로 하여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11조(환기구 통풍면적 계산 및 위치) ① 자연 통풍구조로 설치된 용기보관실의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담장 등 타 건축물과의 간격이 좁은 용기보관실 벽이나, 타 건축물과의 사이에 상부가 막혀 있어 통풍이 잘되지 않는 용기보관실 벽 위치에 환기구 설치 불용)

제12(기존 용기보관실의 재사용시 검사방법) 판매소 공동화 등으로 허가 취소 또는 폐업이 되어 사용하지 않던 용기보관실을 신규허가시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검사처리한다.

① 1993년 6월 26일 이후 현행 고시 규정에 적합하도록 완성검사를 실시 한 것이 전산기록 또는

검사기록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초 및 지주설치 공정에 대한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기타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현행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기술검토 서류에는 기존 용기보관실을 재사용한다는 내용과 기존 시설의 완성검사일자를 표기하여 작성토록 계도한다(기술검토 결과 회신시 기술 검토결과표에도 재사용 내용 표기)

③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완성검사 처리시 기존의 검사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검사기록에 합철한다.

제13조(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공동사용 여부) 동일 부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 또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께하는 경우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의 공동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기술검토시 적용)

①LPG와 다른 가연성가스는 허가 관계법령이 다르므로 동일 용기보관실내에 저장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에서 동일 용기보관실 내의 혼합저장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산자부 인터넷질의회신 2000. 7. 6일).

② 2 이상의 사업자가 최초부터 고압가스 및 LPG판매사업 허가를 각각 받고자 하는 경우의 사무실은 허가 관계 법령이 다르므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에서 공동사용을 인정시에는 제외한다(산자부 질의회신 2001. 4. 10일)

③ 하나의 사업자가 고압가스와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공동사용(사무실 면적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것 중 큰 것 이상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사무실을 공동 사용 도중 사업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자로 분할된 경우에도 허

가관청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실의 공동사용을 인정한다.

제14조(용기보관실 출입문의 구조 등)① 용기보관실에는 방호벽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출입문 1개소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개의 업소가 공동화를 추진하여 용기보관실을 하나로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문을 2개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출입문은 각각의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입문의 가로길이는 1,800m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양 끝단에는 강판 제방호벽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용기보관실 출입문의 세로길이가 2,000mm 미만일 경우 출입문 상부는 방호벽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5조(운반차량 구조확인) 완성·정기검사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통합고시 제9-3-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차량 적재함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영업소의 기술검토) 영업소 설치를 위한 기술검토를 우리공사에 요청시 시설 및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법적 의무 사항은 아님).

제17조(정기검사 사전안내)① 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포함) 시기가 도래되는 업소에는 정기검사 예정일 7일전까지 별표1의 안내문이 업소에 도착될 수 있도록 매월 초에 일괄 발송하거나, 월 2회에 걸쳐 분할 발송한다. 다만, 검사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검사신청 후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일정을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안내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규정 확인·평가 사전안내문 발송을 생략한다.

제18조(위해요인 개선권고) 정기검사시 법적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이외의 사항 중 별표2의 위해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표3의 서식에 의하여 2부를 작성, 1부는 현장에서 발급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1부는 검사표에 첨부한다.

제19조(재검사항목) 재검사시에는 부적합처리된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20조(경미지적사항 처리) 정기검사 경미한 지적사항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미한 지적사항은 별표3의 서식 2부를 작성, 1부는 업소에 발급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1부는 검사표에 첨부하며 검사표 판정(적)란에 “△” 표시후 합격처리한다. 다만, 경미 지적사항 이외의 불합격사항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 표시하여 불합격처리한다.

② 차기 정기검사시 “△” 표시된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 후 미시정시에는 불합격처리한다.

③ 경미한 지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표지 미설치(훼손) 및 온도계 미보유
2. 휴대용 손전등 및 차량정지목 미보유
3. 용기보관실에 가연성물질 및 불필요한 물건 방치

제21조(정기검사일 산정)①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사업소를 이전하여 용기보관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동일부지 내에서 용기보관실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의 정기검사일 산정은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산상의 검사기준일을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일로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표 사용) LPG 판매시설에 사용하는 검사표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완성검사표 : 액91호 검사서식
2. 정기검사표 : 액20호 검사서식(OMR)
3. 중간검사표
 - 가.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 액21호 검사서식
 - 나. 콘크리트블록제 방호벽 : 액22호 검사서식
 - 다. 강판제 방호벽 : 액23호 검사서식

제23조(보칙)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이 지침에 맞지 아니하는 검사기준 발생시에는 개정된 법령의 기준을 따른다.

② 이 지침의 개정으로 이미 업무지시된 사항이 이 지침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변경, 기타 특별한 사안 발생으로 이 지침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부서에서는 조속히 이 지침을 업무지시에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2000. 1.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폐지) 다음 각 항의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① LP가스분야 검사업무에 대한 지침서 (KGS98-17)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지침

1. LPG판매업소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2.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공급권역 설정에 따른 필요성 여부
 3. 판매업소의 정기검사 신청방법
 4. LPG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5. 판매업소의 공급자 의무사항 검사 처리방법
 6. LPG운반차량 운전자의 용기폭발사고와 관련한 사항
 7. LPG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높이가 차량적재함 높이 미달시 검사 처리방법
 8. 판매업소의 공동화 기준 및 검사처리방법
 9. 영업소의 공동화 기준 및 검사처리방법
 10. 판매업소 저장실 방호벽 설치방법 개선방안
 11. LP가스용기 안전관리강화 추진 개선방안
- ② 업무처리지침 중 기술분야의 다음 각호의 지침

1. 판매 및 사용시설 중간검사이침(제2136호)
2. LP가스판매시설 정기검사이시 공급자의무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지침(제2185호)

부 칙(2001. 4.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 신청된 시설의 검사 또는 기술검토 시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위해요인 개선권고 사항

| 구 분 | 위 해 요 인 |
|------|--|
| 시설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형 가스누출검지기 미보유 ○ 용기보관실 내 방폭등 고장 ○ 운반차량에 “경계표지” 및 “적색 삼각기” 부착 불량 ○ 용기보관실 바닥에 고무판 미설치 ○ 환기구 주변에 불필요 물건 방치 |
| 운영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취급시 난폭한 취급 ○ 비상연락망 정비 부실 |

[별표 3]

경미 지적사항 및 위해요인 개선권고 통보서

1. 업소현황

| | | | |
|-------|--|-------|--|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 주 소 | | | |

2. 경미 지적사항(정기검사 항목)

| 번호 | 지적사항 | 비 고 |
|----|------|-----|
| | | |

3. 위해요인 개선권고사항(정기검사항목 외의 사항)

| 번호 | 개선권고사항 | 비 고 |
|----|--------|-----|
| | | |

귀 업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위와 같은 지적사항 및 위해요인 개선권고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조치하여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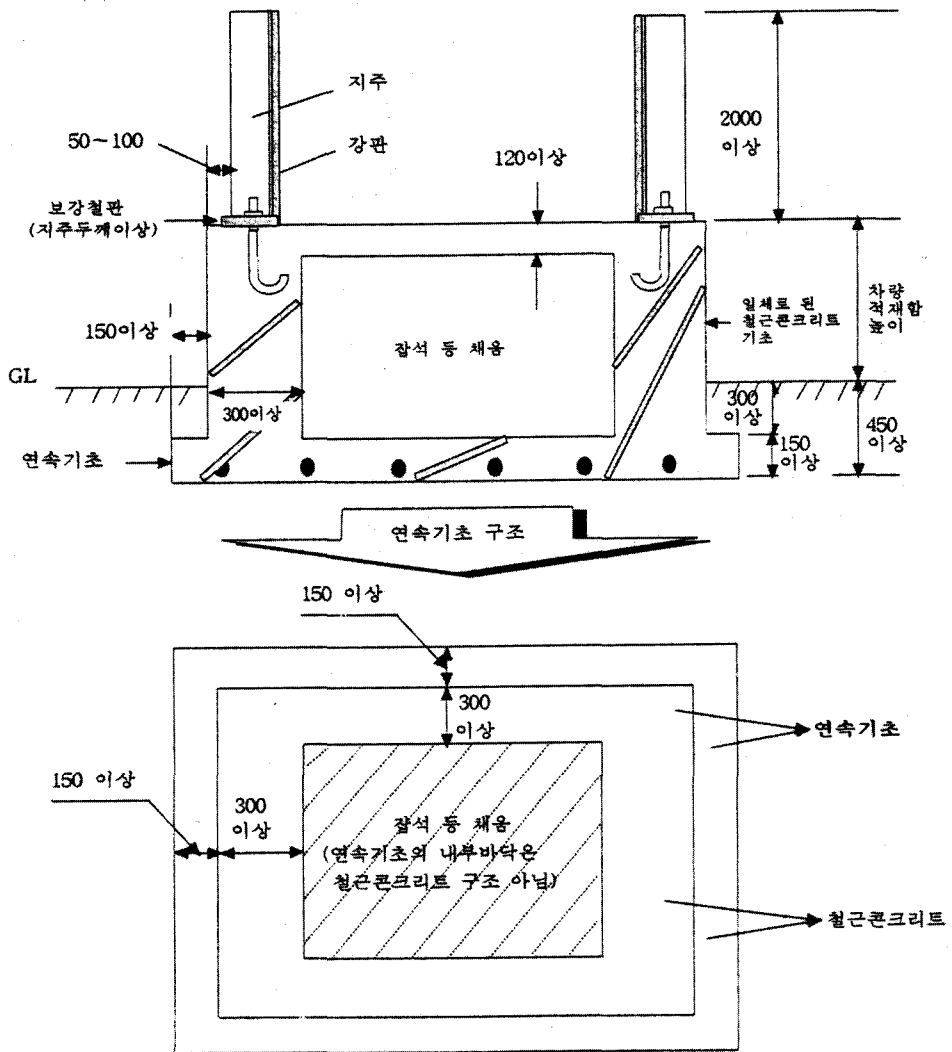
| 구 분 | 성 명 | 서 명 |
|---------|--------|--------|
| 업 소 확 인 | | |
| 검사원 확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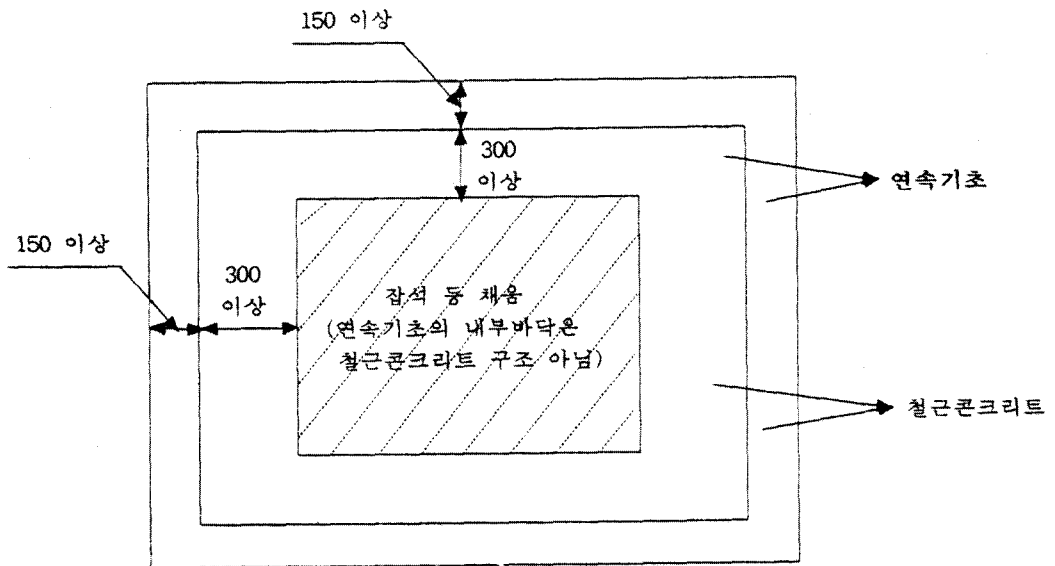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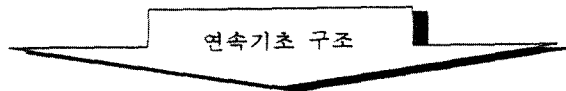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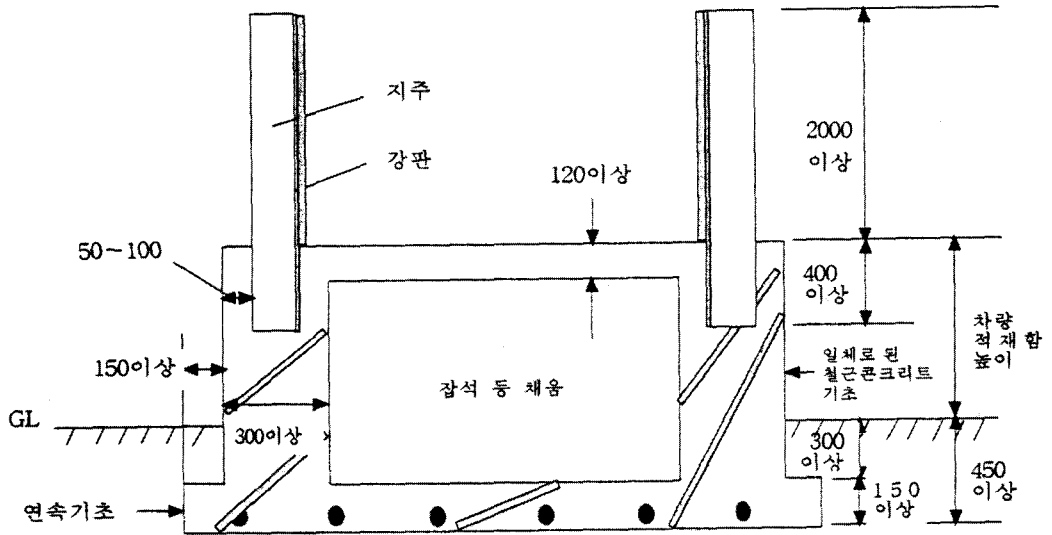
용기보관실을 별도 신축시 바닥높이 상향시의 설치방법 (강판제 방호벽의 경우)

1. 지주를 기초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구조



(주) 단위는 mm임

2. 지주를 기초에 묻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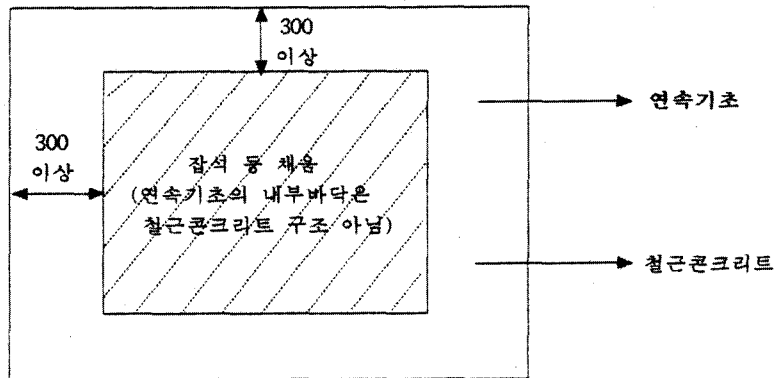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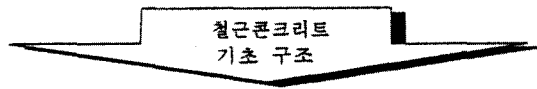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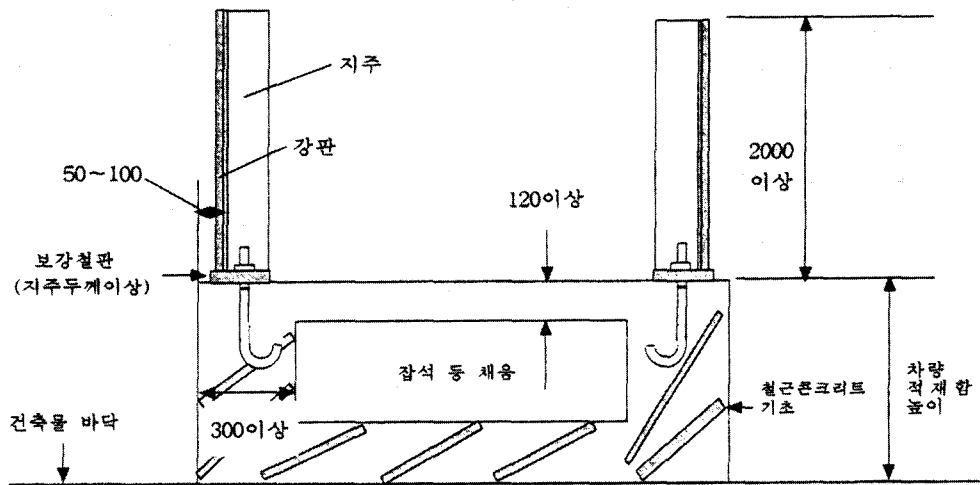


(주) 단위는 mm임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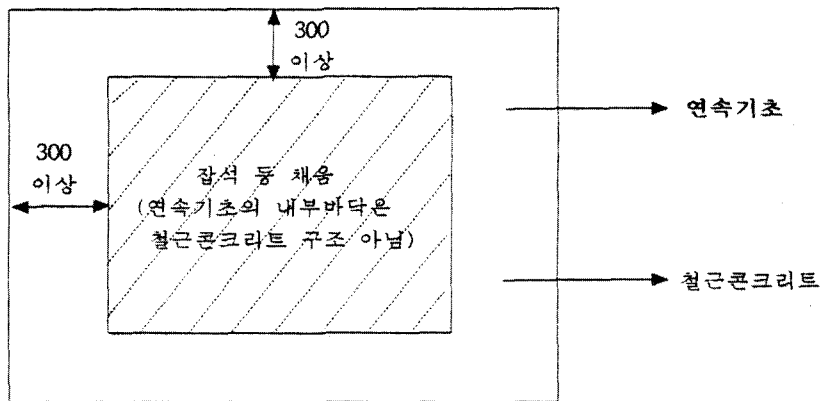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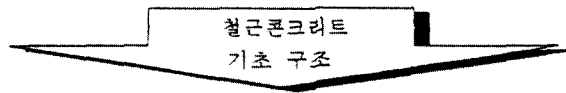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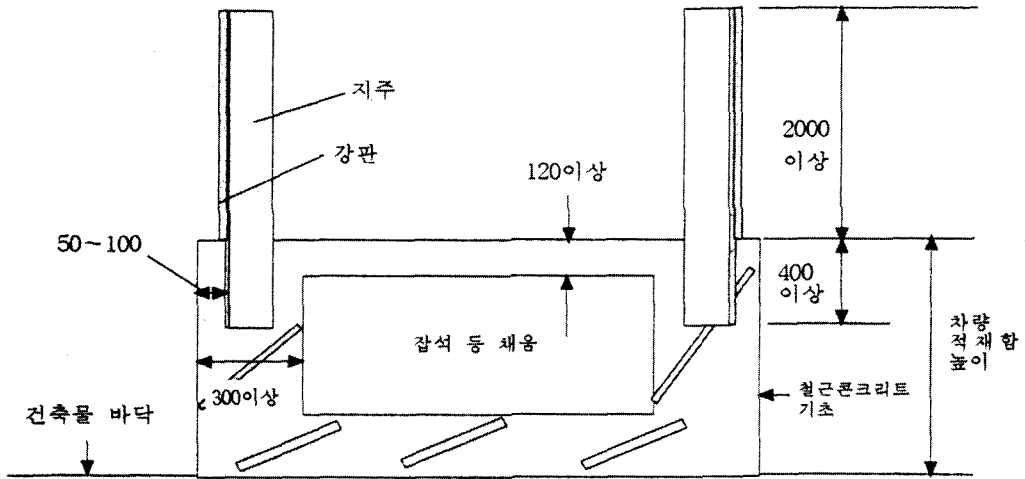
기존 건축물 내 용기보관실 설치시 바닥높이 상향 설치방법 (강판제 방호벽의 경우)

1. 지주를 기초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구조



(주) 단위는 mm임

2. 지주를 기초에 묻는 구조



(주) 단위는 mm임